
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사망자 장례 관련 비용 지원 안내

제8판

(2022. 4. 25.)



충청방역대책본부 · 중앙사고수습본부

1 목적

-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(이하 “코로나19”)로 격리 중인 환자가 사망한 경우, 장례 시 감염예방·관리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(이하 “전파방지비용”)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▶

▶ 종전 「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시신에 대한 장사방법 및 절차 고시」를 근거로 지원하였던 “장례비용”은, 해당 고시가 폐지(‘22.4.25.)됨에 따라 더 이상 지원되지 않음
- 다만, '22.4.24.까지 사망한 경우에 한해서 종전 고시에 따른 “장례비용” 지원

2 적용 대상

- ①코로나19 감염이 확인되어 격리기간 중에 사망한 경우▶, ②사망 후 코로나19 감염이 확인된 경우(사후확진)에 한해서 전파방지비용 지원 적용

▶ 격리기간 이후 사망한 경우는 지원대상이 아님

- 단, ①PCR검사¹ 결과 대기 중 사망한 경우로서, ②PCR검사 결과 대기 중에 「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-19 사망자 장례 관련 감염예방·관리 안내」에 따라 감염예방·관리 조치를 실시한 경우, ③그 PCR검사 결과가 음성인 경우라도, ④PCR검사 결과 대기 중에 실시한 전파방지비용 중 일부² 지원 가능

① 응급용 선별검사(긴급사용승인 제품), 신속항원검사(전문가용) 포함
② “[붙임 1] 전파방지비용 실비 세부내역”의 ▲“장례 절차 관련 비용” 중 “1. 시신 수습 비용” 및 ▲“기타” 중 “先화장 또는 장례식을 치르기 위해 해당시설까지 운구에 사용된 비용 (격리실과 안치실이 서로 다른 기관인 경우 등에 한함)”만 지원. (관 비용은 불포함)

3 지원 내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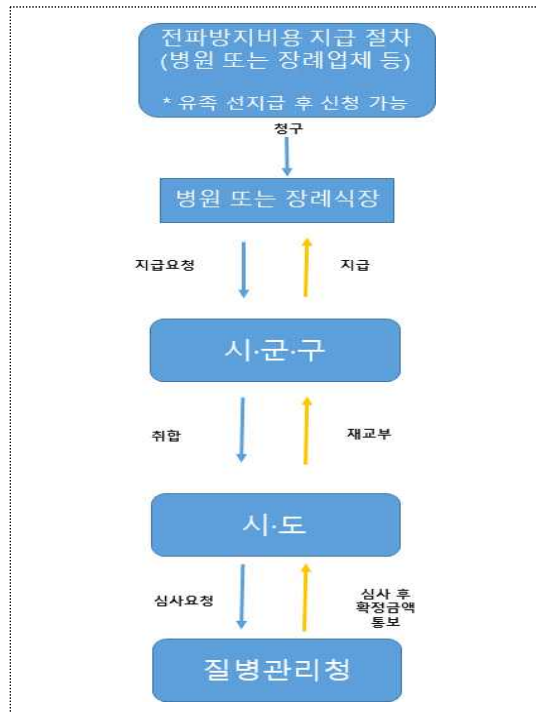
- 「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사망자 장례 관련 감염예방·관리 안내」에 따라 사망자에 대한 장례를 치른 경우에 소요된 전파방지비용 지원

 관련 자료 [붙임 1] 전파방지비용 실비 세부내역

- 전파방지비용은 사망자 1인당 300만원 이내에서만 지원 가능▶

▶ 지자체가 사망자로 인한 코로나19 전파 방지 등을 위해 별도로 실시한 조치를 이행했을 경우 지방비로 해당 조치비용을 별도 집행 가능(단, 전파방지비용과 중복 지급 불가)
▶ 300만원 초과 비용에 대하여는 지자체 재량에 따라 지원 가능

4 신청 절차



① 병원, 장례식장 또는 유족이 사망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·군·구에 신청

▶ 유족의 경우 병원이나 장례식장에 전파방지비용을 선지급한 때에 한하여 신청 가능

관련서식 [붙임 2] 전파방지비용 신청서류

② 신청을 받은 시·군·구는 사망자 관련 병원의 장례식장 등에 대해 사망자의 격리 기간 및 시신 밀봉·안치, 시신 위생관리, 입관 등에 소요된 실제 전파방지비용 내역 확인

▶ 병원, 장례식장 또는 화장시설에 대해 항목별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 요청 가능

③ 해당 시·군·구는 시·도를 거쳐 사망자와 관련한 전파방지비용 실비에 대해 질병관리청으로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(매월 25일까지)

관련서식 [붙임 3]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서

④ 질병관리청은 시·도를 거쳐 해당 시·군·구에 국고보조금 교부

⑤ 해당 시·군·구는 신청인에 대해 전파방지비용을 송금

붙임 1
전파방지비용 실비 세부내역

구분	지출 내역	내역별 상한가*		
장례 절차 관련 비용	1. 시신 수습 비용	①40만원		
	2. 장례식장 내 입관 절차(간이접견 포함) 수행	시 신 위 생 관 리	미 실 시	②50만원
			실 시	③80만원
	3. 화장시설 이용료 ▶ 先화장을 하는 경우에 한하며, 실비 지급	100만원		
물품비	1. 시신백	20만원		
	2. 관(오동나무관 기준) ▶ 관을 운구하기 위한 관보, 결관바 등을 모두 포함한 금액	20만원		
기타	1. 先화장 또는 장례식을 치르기 위해 해당 시설까지 운구에 사용된 비용 ▶ 장례를 치른 후 화장시설 운구 비용은 불인정	40만원		
* 내역별 상한가 상세 내역 가. ①40만원 : 1인 기준 20만원을 상한가로 함 나. ②50만원 : 인건비 20만원(1인 기준 10만원을 상한가로 함) 및 연습실 사용료 30만원 다. ③80만원 : 인건비 50만원(1인 기준 25만원을 상한가로 함) 및 연습실 사용료 30만원				
[유의사항] ○ 「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사망자 장례 관련 감염예방·관리 안내」에 따라 절차를 진행한 경우에 한함 ○ 신청 합계 상한가액은 사망자 1인당 300만원으로 함 ○ “장례 절차 관련 비용” 중 “1. 시신 수습 비용”과 “2. 장례식장 내 입관 절차(간이접견 포함) 수행” 관련 경비는 동일한 업체가 해당 절차를 실시한 경우에는 “2. 장례식장 내 입관 절차(간이접견 포함) 수행”의 상한가 내에서 지급 ○ 先화장은 유족의 결정에 의해서만 실시.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가급적 관내 화장시설 사용 권고 ○ 규정사항 외 조치에 따른 비용은 지급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○ 금액 기준은 장사법령에 따라 장사시설에 게시된 가격표 및 등록된 금액 기준으로 지급				

붙임 2

전파방지비용 신청서류

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전파방지비용 지급 청구서

※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
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	발급일	처리기간	즉시
사망자	성명	주민등록번호	-	①확진연월일
	주소	사망연월일		
②신청자	상호	사업자등록번호		
	소재지			
	대표자 성명	주민등록번호	-	
	청구금액	금 원정 (₩ 원)		
	입금계좌	예금주명		
③청구 내역	항목	세부내역		금액

코로나19 사망자에 대한 장례 시 감염예방·관리 조치에 소요된 비용의 지급을 청구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신고인 제출서류	1. 청구내역별 증빙서류 (물품 구매 영수증, 세금계산서, 인력의 주민등록증 사본 등) 2. 통장 사본
담당 공무원 확인사항	1. 해당기관이 청구한 비용의 허위·과다 등 증빙자료 확인 2. 유족에게 운구 등 사실 확인
작성방법	① 확진연월일은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서 기입 ② 유족이 신청하실 경우에는 △상호, △소재지, △사업자등록번호 기입 불필요 ③ 항목은 △장례절차 관련 비용, △물품비, △기타로 구분 - 시신 밀봉, 위생관리 등의 인건비를 청구할 경우 장례지도사 등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연락처, 역할, 조치일시를 별지 첨부 - 운구차량 임차료를 기타로 청구할 경우 운전기사 인건비도 포함해서 청구 ※ 허위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됨에 유의

210mm×297mm(일반용지 60g/㎡)

사 업 명
장례지원비 지원

가. 교부신청액

(단위: 천원)

사업명	3월	4월	5월	계
계				
예방조치 비용				

나. 세부 내역

시·군·구명	예방조치비용		계	
	인원수	신청액	인원수	신청액
계				
00시				
00군				

□ 사업담당자

소속	부서명(팀)	과장	팀장	담당자
		이름	이름	이름
		연락처	연락처	연락처